

2010.11.15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SM(기업형슈퍼마켓) 규제 법안(유통법과 상생법)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각계 입장,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한 것임.

□ SSM 규제법안 개요

○ SSM 규제법안은 유통법(유통산업발전법)과 상생법(대중소기업상생법) 두 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말함.

- 유통산업발전법(유통법) 중 개정안

· 전통시장 500m 내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점포 및 직영, 가맹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재래시장을 보호토록 함.

- 대중소기업상생법(상생법) 중 개정안

· 직영 기업형 슈퍼마켓 뿐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% 이상인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.

※ 대중소기업상생법(상생법)에 따르면, 대기업 지분이 51% 이상인 SSM 가맹점은 주변 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 및 영업을 미루고 소상공인과 먼저 협의해야 하며, 필요시 협의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SSM의 영업 방법이나 시간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.

※ 따라서 상생법은 재래시장 500m 안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 보다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SSM 규제법안의 국외 처리 현황

○ 관련 상임위에서는 유통법(유통산업발전법)과 상생법(대중소기업상생법)

두 가지 법률의 개정안이 이미 2010년 4월 23일에 통과됨.

○ (유통법) 본회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다가 최근 통과됨.

- 개정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와 논란으로 그간 본 회의 통과가 지연

· 유통법안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후 법제사법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 가량 표류

· 정부에서 상생법 개정안의 국제통상 규정 및 한·EU FTA 저축 우려를 들고 나오면서 더욱 난항

- 2010년 11월 10일, 국회 본회의에서 SSM규제 유통산업발전법(유통법) 개정안 국회 통과

·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, 반대 1표, 기권 1표로 법안이 가결

○ (상생법)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.

-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(상생법)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2주 뒤로 처리가 연기됨.

□ SSM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당의 입장

○ (정부)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등 이유로 반대

- 상생법은 WTO 규정에 위배되고 특히 한·EU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·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EU와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초 여야합의로 2010년 10월 25일 처리키로 했던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

○ (여당)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 입장

-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여 중소기업청의 'SSM사업조정 시행지침'이 시행될 경우 상생법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유통법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

○ (야당) SSM 관련법의 동시 통과가 기본 입장

- 야당은 유통법 만으로는 SSM을 막기에 역부족이므로 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
- 상생법 개정안이 국제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통상협정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우려라고 주장

□ SSM규제 법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

○ (대형유통업계) SSM 규제법안은 법안 자체가 “너무 반기업적이다”라는 비판을 제기함.

- 선진 유통업체인 SSM 개점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과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
- 실제 중소상점에 위협이 되는 것은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이라며 이들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만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.
-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각 지자체에 맡긴 이상 전국 1,000여개 전통시장을 모두 보전구역으로 설정하면 SSM 출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필요

○ (중소유통업계) 그간 SSM 규제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SSM 점포가 급증하였고, SSM 규제법안은 허가제·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영성한 규제라고 비판

- SSM규제 법안이 정치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SSM 점포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 - 참여연대는 MB정부 들어 SSM의 폭증으로 2만 여개의 소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80여만개의 영세자영업이 도산한 것으로 발표
- SSM 중 가맹점 형식의 SSM 출점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상인과 신규 SSM 가맹점을 출점하려고 하는 중소 상인들 간에도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적 긴장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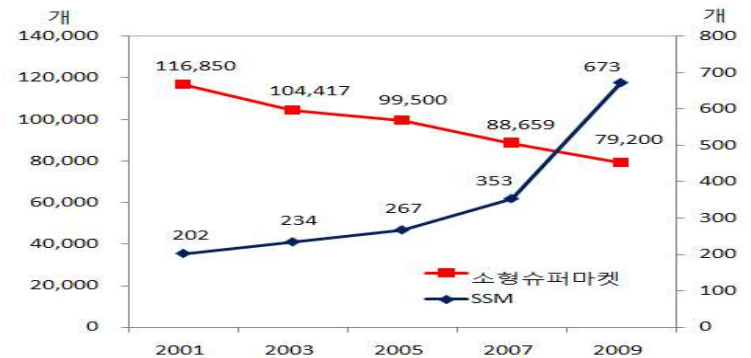
- 유통법 개정만으로는 가맹점 형태로 입점하는 경우 막을 수 없다는 입장
- 현행법상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므로 SSM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형태로 출점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음.
- 유통법만 분리되어 통과되면 오히려 SSM 입점을 합법화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

○ 2009년 SSM 총 점포수는 673개로 2007년대비 91% 증가한 반면, 소형슈퍼마켓은 7만 9,200개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

○ 한편, 2010년 10월말 현재 SSM 점포수는 787개로 추정

- 이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, 롯데슈퍼, GS슈퍼 등 BIG3가 591개로 전체의 75% 차지
- 전체 787개 중 23곳은 가맹점 형태

<SSM 및 소형슈퍼마켓 현황>



주: 소형슈퍼마켓은 면적 150㎡ 이하 매장임.
 자료: 경향신문(2010. 11. 2)에서 보도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

□ 양우 전망

○ SSM 규제법안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금년 정기 국회에서 국회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- 유통법은 '10년 11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,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의 시행이 힘들어져 유통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.
- 상생법의 통과 문제는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정부의 통상문제 거론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.
 - 여야는 11월 중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지만, 실제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